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10. 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10. 11
- 라. 상정일자 : 2010. 10. 21.(제18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채용, 교육훈련 등 인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상에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공고 생략근거 명시(안 제5조제2항)
-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근무성적 평정결과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 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
- 안 제12조의 2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 전원기, 김기홍 위원

-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 사유
- 별표1의 6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 중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자로 한 사유

< 답 변 >

○ 황의식 자치행정국장

- 채용 공고시 임용자격기분을 명확히 하여 공고하고 있음
-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상에 명시
-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전국 공통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홍성욱, 이재병, 김기홍, 전원기, 허회숙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1.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지”를 “부터”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제목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7조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시장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p>※ <u>비 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용절차 등) ① <u>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u></p> <p>② <u>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u></p> <p>제5조(임용절차 등)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 설 〉</p>	<p>제4조(적용범위) ①-----<u>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u>-----</p> <p>-----</p> <p>② -----<u>부터</u>-----<u>임용하는 사람은 해당</u>-----<u>사람을</u>-----</p> <p>-----</p> <p>③ <u>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u></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p> <p>-----</p> <p>-----<u>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u>-----</p> <p>-----</p> <p>②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u>비서관 및 비서</u></p> <p style="margin-left: 20px;">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전보) <u>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9조(당연퇴직)----- -----<u>각호</u>----- -----</p> <p>제10조(직권면직)----- -----<u>각호의 1</u>----- ----- 1.~ 3. (생략) 4. <u>기타</u>-----</p>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u>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u></p>	<p>제7조(전보)----- ----- -----<u>일반직공무원</u>----- -----</p> <p>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u>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u>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u></p> <p>제9조(당연퇴직)----- -----<u>각 호</u>----- -----</p> <p>제10조(직권면직)-----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3. (생략) 4. <u>그 밖에</u>-----</p>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 ----- ----- ----- -----<u>반영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시장은 <u>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 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u>시장이 정한다.</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u>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u></p>